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27호 2021. 10.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진평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75호)

공 고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1-22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1-2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진평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성평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진평2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안전한 마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안전한 마을길 조성, 안전 CCTV 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1년(2년간)
8.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불임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사용 범위(이용대상)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관 사용범위 삭제(안 제7조 삭제)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3조제1항제2호)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별표 수정(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예천군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gmlwhd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3) 팩스 : 054-650-6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제12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청 소 년 극 장	1 일	(09:00 ~ 22:00)	140,000	180,000	
	오 전	(09:00 ~ 12:00)	45,000	60,000	
	오 후	(13:00 ~ 17:00)	60,000	75,000	
	야 간	(18:00 ~ 22:00)	70,000	90,000	
실 내 집 회 장 (세미나실 및 전시실)	1 일	(09:00 ~ 22:00)	100,000	130,000	
	오 전	(09:00 ~ 12:00)	30,000	40,000	
	오 후	(13:00 ~ 17:00)	40,000	55,000	
	야 간	(18:00 ~ 22:00)	50,000	65,000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청 소 년 극 장	조 명	1일	50.000	•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앰프)은 무료임
		1회	20.000	
	빔 프로젝트	1일	50.000	
		1회	20.000	
	음향	1일	50.000	
		1회	20.000	

※사용기준 : “1일”은 09:00~22:00까지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임

[냉 · 난방기 사용료]

장 소	기준	단위	사 용 료(원)	비 고
청 소 년 극 장	냉방 · 난방	1 일	7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1 회	30,000	
실 내 집 회 장	냉방 · 난방	1 일	50,000	
		1 회	20,000	

☐ 실내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어린이	비 고
1일	3,000	2,000	1,500	※ 단체 입장 시 30% 감면
1개월	60,000	40,000	30,000	

☐ 체력활동장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6:00 ~ 21:00	무 료	무 료	※ 13세 미만의 사람은 사용을 제한함

☐ 작은도서관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9:00 ~ 21:00	무 료	무 료	※ 도서열람 및 대출 09:00~18: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조(사용범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예천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u> 2. <u>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u> 3. <u>그 밖에 지역주민 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및 단체</u>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50퍼센트 감면 가.·나. (생 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마.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삭 제></u>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u><신 설></u>	<u>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u> <u>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u> <u>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u> <u>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람</u>
<u><신 설></u>	<u>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u> <u>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u>시행령」 제52조제1항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사람</u>
<u><신 설></u>	<u>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u> <u>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u>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u> <u>는 사람</u>
<u><신 설></u>	<u>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u> <u>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u> <u>람</u>
<u><신 설></u>	<u>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u> <u>우 등에 관한 법률」 제2</u> <u>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u> <u>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u> <u>5호에 따른 등록포로</u>
3. (생 략) ②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예천군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 예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용어 정비
 - “이용자, 이용료” 정의 삭제(안 제2조제4호 삭제 및 제2조제8호)
 - “어른”을 “성인”으로 하고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 “노인”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3호)
-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이용료 삭제(안 제4조제1항)
- 초과사용료 중 이용료 부분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삭제)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 체육시설 운영 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 이용료 삭제(안 별표 2 삭제)
-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중 어른을 성인으로 수정(안 별지 제1호 서식)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예천군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gmlwhd20@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

3) 팩스 : 054-650-64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이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예천군문화체육센터,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게이트볼장, 공설테니스장, 군민탁구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예천군 체육시설”로, “사용에 관하여”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12. “성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용사용료, 이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경로자, 군인”을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주 소 (단 체)								성 명 (단 체)			
사 용 일 시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전 화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료	기 본 사 용 료										
	앰 프 료	(마이크 대, 확성기 조)									
	라 이 트 사 용 료										
	기 타										
	계										
관람료	지정석	원	성인	원	청소년 군 인	원	어린이 노 인	원			
입장예상 인 원	임 원	명	선 수	명	관람자	명					
경기용구 및 비품사용	본부석										
	경기장										
	기 타										
계 시 물 종 류				장소			수량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예 천 군 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예천군이</u> <u>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예천</u> <u>군문화체육센터, 예천진호국제</u> <u>양궁장, 스포츠 종합레저타운,</u> <u>게이트볼장, 공설테니스장, 군</u> <u>민탁구장(이하 “체육시설”이라</u> <u>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예천군 체</u> <u>육시설-----</u> ----- ----- ----- ----- ----- <u>운영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을 -----.</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라 함은 <u>개인연습,</u> <u>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u> <u>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u> <u>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u> <u>말한다</u>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본액”이라 함은 <u>기본사용</u> <u>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u>	8. “기본액”이란 <u>기본사용료를</u> <u>말한다</u>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어른”이라 함은 <u>청소년과</u> <u>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u> <u>자를 말하며, 이중</u>	12. “성인”이란 <u>군인을 제외한 1</u> <u>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u> <u>한다.</u>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상행위의 사용료로 구분하며,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별표와 같다.

② ~ ④ (생략)

제6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1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생략)

2. 이용 사용시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

② (생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료) ① -----
----- 전용사용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초과사용료)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사에

1. · 2. (생략)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
이, 경로자, 군인

4. · 5. (생략)

<신설>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 5.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
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
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사용시간) ①·② (생략) <u><신설></u>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2조(사용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참고 1

[별표 2] 이용료

【별표 2】

이 용 료(제4조1항관련)

시 설 명	이 용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공 설 운 동 장	개 인	트 랙	1회 2시간	100원	
		필 드	"	100원	
	단 체	트 랙	"	1인 50원	30인 이상
		필 드	"	1인 100원	30인 이상
문 체 화 센 터 욕 양 궁 장	개 인		"	1,000원	
	단 체		"	1인 500원	30인 이상
군민탁구장	어 른		1시간	2,000원	12세이하 및 65세이상(무료)
			월회원권	30,000원	
	청 소 년 , 군 인		1시간	1,500원	
			월회원권	20,000원	